

2003.3.7(金)

檢 討 報 告 書  
(第118回 臨時會)

達 城 郡 議 會  
專 門 委 員 文 乙 姬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2.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강화 및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재배치 조정하는 등 우리군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3) 주요내용

- 본청 기구개편
  - 국 명칭변경
    - 총무국 ⇒ 행정관리국, 도시국 ⇒ 건설도시국(안 제3조)
  - 과 신설(증3)
    - 허가과(사회산업국), 공영개발과(건설도시국), 정보통신과(행정관리국)
    -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과 통 · 폐합(감2)
  - 지역경제과 + 농축산과 ⇒ 경제산업과(사회산업국)
  - 도시과 + 건설과 + 건축과 + 지역교통과  
⇒ 건설방재과 + 도로교통과 + 도시건축과(건설도시국)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과 폐지(감1)
  - 문화공보담당관(안 제4조)
  
- 과 명칭변경
  -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과(행정관리국)  
(안 제4조 및 제5조제1항)

○ 한시기구 변경

-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과(부칙 제3조)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 및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재배치 조정하여 본 군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기구개편(본청)

구분	계			부군수			총무국 (행정관리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도시국)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현행	조정	증감
과	16	16	0	2	1	1	5	6	1	4	4	0	5	5	0
담당	61	63	2	7	4	3	19	22	3	18	19	1	17	18	1

- 국 명칭변경
  - 총무국 ⇒ 행정관리국, 도시국 ⇒ 건설도시국
- 과 신설(증3)
  - 허가과,                      공영개발과,                      정보통신과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행정관리국)
- 과 통·폐합(6⇒4 감2)
  - 지역경제과 + 농축산과 ⇒ 경제산업과(사회산업국)
  - 도시과 + 건설과 + 건축과 + 지역교통과  
 ⇒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건설도시국)
  - 과 폐지(감 1) : 문화공보담당관
  - 과 명칭변경 :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과

○ 과 신설(3개과)

- 금번 신설되는 허가과는 현행 조직에서 2~3개과를 거쳐야하는 종합복합민원 처리를 동일과 단위에서 완전처리 되므로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및 주민편의 측면에서 조직개편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 공영개발과 신설은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중점으로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우리 군의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에 일익을 할 것임.  
  
 아울러, 과 운영과정에서 현재 행정운영의 과·담당 고유업무분장 개념보다는 기업 형태의 단위 사업별 팀 개념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통신과 신설은 정보화 추세에 맞춰 우리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정보, 사회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또한 신지식을 넓혀 더욱더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는 첩경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과 통·폐합(6⇒4 감2)
  - 업무가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 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서 명칭변경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증원이 아닌 현 정원내에서 개편 조정되므로, 공무원 내부에서 민원이 많은 부서, 책임이 중한 부서,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바, 개인의 능력, 자질은 물론 업무추진상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직렬을 안배 조정하여야 조직개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2.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사유

-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군 설치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 2) 근거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3) 주요내용

- 세무서장이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단축하여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함.(안 제22조의2제3항)
- 재산세 본문중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함.(안 제27조제1항제1호(3)목 및 제2항)

-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읍·면』에서 『군』으로 설치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연장함.(안 제98조제2항)
- 제5절 담배소비세 본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관련용어를 정비함.(안 제53조 등)

####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2002.12.30) 및 법령폐지로 인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개정은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3항 중 “그 다음달 말일”이 “그 다음달 15일”로 개정됨으로 인함.
- 개정조례안 제27조(세율) 제1항제1호3목 및 제2항 개정은 “도시계획법”의 폐지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개정임.
- 개정조례안 제52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설치)제1항제2항 개정은 소득세법 제213조제1항중 “시·읍·면”이 “시·군”으로 개정됨으로 인함.
- 개정조례안 제98조(납기) 제2항 개정은 소득세법 제250조제3항 중 “7월 10일”이 “7월 31일”로 연장 개정됨으로 인함.

##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2.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사유

-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및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중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 2) 근거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3) 주요내용

-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함.(안 제9조제2항)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중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읍·면 기능전환으로 부과 징수권의 군 이관에 따라 사무처리위임 규정 제23조를 삭제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3조)

####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폐지 및 개정으로 인한 정비임.
- 개정조례안 제9조, 제14조 개정은 “도시계획법”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03.1.1)으로 인한 정비임.
- 개정조례안 제23조 삭제 조항은 읍면 기능전환으로 부과 징수권의 군 이관에 따라 읍면 사무처리 위임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임.

#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2.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사유

-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및 사업자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 2)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법제상의 조치 등)

## 3) 주요내용

- 환경기본조례의 목적·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와 군·사업자·군민의 책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9조)
- 환경보전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  
(안 제10조 내지 12조)
-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영향검토,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안 제13조 내지 20조)

-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강구(안 제21조 내지 25조)
-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안 제26조 내지 36조)

#### 4. 검토보고

- 본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및 사업자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대구광역시, 서울 강남구, 대구광역시 동구 등 조례 참조

- 조례안 제1조(목적)
- 안 제2조(기본이념)
  - 환경보전시책추진
  - 환경친화적인 발전 및 보다 양호한 상태 유지·조성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
- 안 제3조(기본원칙)
  - 자연, 생활, 지구환경보전·관리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원인자 부담
  - 환경정보공개, 군민참여

○ 안 제4조(정의)

- 환 경 : 자연, 생활환경
- 자연환경 : 지하·지표·지상의 생물, 비생물 등 모든 자연상태
- 생활환경 :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등)
- 환경오염 : 사업활동,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어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수질, 대기, 방사능 오염등)
- 환경보전 : 훼손된 환경을 보호·개선하여 쾌적한 상태로 유지·조성
- 지구환경보전 : 지구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

○ 안 제5조(군의 책무)

- 지역환경보전 시책 수립·시행

○ 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

- 사업활동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자연환경보전
- 제품생산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정보제공
-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및 재정지원

○ 안 제7조(군민의 권리)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환경시책수립, 추진과정 등 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알권리

○ 안 제8조(군민의 책무)

- 일상생활에서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 노력
-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 시정 또는 관할기관 신고
- 환경과 관련된 지역이기주의 지양 및 환경보전시책 협조
-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노력

○ 안 제9조(학교·언론등의 역할)

- 학교는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
-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 노력
- 민간환경단체 등은 환경보전 홍보와 감시활동에 노력

○ 안 제10조(환경기본계획)

- 환경보전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책방향, 목표 및 지표 전망,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등>
- 환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군민의견 반영
- 주요계획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조치

○ 안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
- 자연환경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시행
- 자연환경의 오염 및 훼손시, 원래의 형태로 회복
-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 및 보존

-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안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
- 안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
- 안 제14조(환경영향검토)
  - 사업자의 시행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조치 강구
- 안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 공공환경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
- 안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추진되도록 조치 강구
- 안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기술제공 등, 이에 따른 예산 범위내 재정지원
- 안 제1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 환경보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교류 등 협력
- 안 제19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등)
  -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 노력
- 안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신속해결 및 피해구제 노력

- 안 제21조(정보의 공개)
  -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공개
  
- 안 제22조(군민참여등)
  -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과정에 군민의견 반영 및 참여기회 제공
  - 환경보전시책 수립·집행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체 구성
  
- 안 제23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군민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 추진에 따른 조치 강구
  
- 안 제24조(환경조사)
  - 필요한 경우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 실시후 군민에게 공개
  - 위항의 조사에 관계전문가, 군민, 민간단체 참여
  - 환경조사에 관한 정보수집, 조사실시후 성과 보급
  
- 안 제25조(환경백서 발간)
  -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홍보를 위한 환경백서 작성 공포
  
- 안 제26조(추진협의회의 설치등)
  - 안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
  
- 안 제27조(협의회 구성)
  -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 구성,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 경험있는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 안 제28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 회무 통할
  - 부위원장은 위원장 보좌, 위원장 직무대행
  
- 안 제29조(임기)
  - 공무원 :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위촉위원 : 2년, 연임 가능
  
- 안 제30조(회의)
  - 정기회, 임시회
  -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시
  - 회의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안 제31조(협의회의기능)
  
- 안 제32조(위원의 해촉)
  -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 불가능시
  - 본인 사직 희망시
  - 임무수행 불능 및 협의회 발전 부적정 판단시
  
- 안 제33조(공청회 개최)
  - 협의회는 필요시 조사·연구의뢰,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군민의견 청취
  
- 안 제34조(재정지원) : 위항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범위내 지원
  
- 안 제35조(수당등) :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제외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